

#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개정고시 안내

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1일 개정·시행하였던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(산자부고시 제2005-7호)에 대하여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, 불임과 같이 개정·공포(산자부고시 제2005-71호, 2005.7.12)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 
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의 개정전문은 협회홈페이지 법률정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- 71호

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,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, 제22조제3항, 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"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"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05. 7. 12  
산업자원부장관

법령정보  
ACT INFORMATION

### 1. 배경이유

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제도의 건전한 육성·발전을 위하여 공사감리원의 배치방식을 개선하고, 동 고시 개정(산자부고시 제2005-7호, '05.1.21)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을 공사기간동안만 배치할 수 있도록 함(제33조제1항)
- 나.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되는 발전설비공사에 대하여도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둠(별표 2 비고 제4호가목)
- 다. 공동주택 부분과 건축물 부분이 혼재된 복합건물에 대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함(별표 2의2 비고 제4호)
- 라. 별표 2의2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시 감리원배치 인원수의 상한을 도입하여 타 분야 감리와의 형평성을 제고(별표 2의2 비고 제4호)
- 마. 개정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(부칙)

개정고시 신·구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33조(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) ① 감리업자 등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압기, 차단기,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<u>교체공사에</u> 대하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배치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[별표 2]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(제25조제1항관련) 단위 : 인×월 (표 생략)</p> <p>※ 비고 1. ~ 3. (생략) 4.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는 당해 공사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감리원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. 가.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송전·변전설비공사의 경우,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 또는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. 나. (생략) 5.·6. (생략)</p> <p>[별표 2의2]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(제25조제2항관련) (표 생략)</p>	<p>제33조(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보수공사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2]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(제25조제1항관련) 단위 : 인×월 (표 생략)</p> <p>※ 비고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----- -----<u>발전</u> · 송전· 변전설비공사의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 5.·6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2의2]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(제25조제2항관련) (표 생략)</p>

현 행	개 정
<p>※ 비고 1. ~ 3. (생략) (신설)</p>	<p>※ 비고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된 복합건물은 다음 각목과 같이 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.</u> 가. <u>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,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위 표 가목 공동주택으로 적용한다.</u> 나. <u>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,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위 표 나목 건축물로 적용한다.</u> 다. <u>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,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, 공동주택과 건축물 부분 각각에 대해 위 표 감리원배치기준에 의해 감리원배치 인원수를 산출한 후 그 감리원배치 인원수가 많은 부분으로 적용한다.</u></p>
<p>(신설)</p>	<p>5. <u>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여 총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,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
<p>(신설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①(시행일)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적용례) 이 요령은 공포후 최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. ③(용역대가 및 감리원배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사업공고를 하고 계약이 되지 아니한 당해용역에 대하여는 종전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전 요령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-7호에 한한다.</p>

# 정보통신공사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내

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공고번호 : 정보통신부공고 제2005-43호
- 입법예고기간 : 2005. 7. 11 ~ 8. 1
- 관련문의 :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안전과(Tel.02-750-1378)
- 전문참고 : 정보통신부 (www.mic.go.kr/정책넷/법령자료/입법예고)

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## 가. 기업진단보고서 작성기준일 변경(안 제10조제2항제2호)

- (1)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합병 신고시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합병계약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
- (2) 그러나, 합병회사가 실제 합병 등기시 까지는 인수절차 등에 따라 장시간 소요 되어 계약 당시의 자본금과 실제 합병 등기시의 자본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됨
- (3) 따라서, 시행령 제17조와 동일하게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기준일을 합병등기일로 변경하여 미비된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

## 나. 사용전검사 신청 주체 변경(안 제18조제6항)

- (1) 사용전 검사는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에 사전 점검을 통하여 입주자가 정보통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
- (2) 발주자가 자신의 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
- (3) 따라서, 사용전 검사의 신청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하여 법 제36조와 일치시키고자 함

## 다. 누락된 인용조문 추가(안 제25조제2항)

- (1)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관은 공사협회에 감리원 경력인정 및 기술자

수첩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위임·위탁하고 있음

- (2) 또한, 공사협회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업무 처리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, 이에 대한 인용조문(법 제69조제2항)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

**라. 수수료 항목 신설(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별표 2)**

- (1) 법 제8조 규정을 개정함(04.1월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감리원 경력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,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
- (2) 따라서, 동 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, 시스템 설치비 등을 고려한 세부 수수료를 별표2에 추가하고자 함

##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내

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의 개정(2005. 5. 26. 공포, 법률 제7508호)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「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의 개정(안)을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공고번호 :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-165호
- 입법예고기간 : 2005. 7. 11 ~ 8. 1
- 관련문의 :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(Tel.02-2110-5445)
- 전문참고 : 산업자원부 (<http://www.mocie.go.kr/법령자료/입법예고>)

### 1. 개정안목

전기사업법의 개정(2005. 5.26. 공포, 법률 제7508호)에 따라「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,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- ① 다중이용시설, 위험시설 등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

대한 사용전점검은 전문검사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토록 하고,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전점검 신청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중 점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

②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·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

**나.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**

- ①전압 600V이하로서 용량 10kW이하인 발전기를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하고,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대상에서 삭제함
- ②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결과, 기술기준에 부적합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함
- ③전기안전공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3년간 기록·보존토록 함
- ④기타, 개정법률에 의해 부적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등 권한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,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함

**법령정보**  
ACT INFORMATION

전기사업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42조의2(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)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"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 또는 시설(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)에 설치한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42조의2(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다만, 다음 각호외의 설비 또는 시설(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)에 설치된 전기설비중 당해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(이하 "안전공사"라 한다)로부터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</p>

현행	개정
<p>〈신설〉</p>	<p>가. 「정부조직법」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시설</p> <p>나. 「지방자치법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부속기관의 시설</p> <p>다. 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」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시설</p> <p>라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시설</p> <p>5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시설</p> <p>가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에서 규정하는 화약류(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)를 제조하는 사업장</p> <p>나. 「광산보안법」에 의한 갑종탄광</p> <p>다.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·충전·판매시설 또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·저장·판매시설</p> <p>라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·저장소 및 취급소</p> <p>마. 「석유사업법」에 의한 유류판매사업소</p>
<p>〈신설〉</p>	<p>6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다중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</p> <p>가. 「공연법」에 의한 공연장</p> <p>나. 「영화진흥법」에 의한 영화상영관</p> <p>다.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한 유흥주점·단란주점</p> <p>라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체력단련장</p> <p>마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의한 대규모점포·상점가</p> <p>바.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기관</p> <p>사.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 및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숙박업·목욕장업의 시설</p> <p>아.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</p>

현행	개정
<p>〈신설〉</p>	<p>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집회장·종교집회장</p> <p>7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</p> <p>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보육시설</p> <p>나. 「유아교육법」에 의한 유치원</p> <p>다.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아동복지시설</p> <p>라. 「청소년기본법」에 의한 청소년시설</p>
<p>〈신설〉</p> <p>제42조의3(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) ①법 제66조의2제3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"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동조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업을 말한다.</p> <p>②법 제66조의2제6호에서 "대통령이 정하는 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8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</p> <p>제42조의3(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) ①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</p> <p>②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9조(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재원)</p> <p>①</p> <p>-----</p> <p>-----한국전기안전공사(이하 "안전공사"라 한다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9조(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재원)</p> <p>①</p> <p>-----</p> <p>-----안전공사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</p>	<p>제6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산업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</p>



현행	개정
<p>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산업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종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p>

전기사업법시행규칙 신규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3조(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) ①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34조(검사결과의 통지 등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3조(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4조(검사결과의 통지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
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제35조의4(정기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등)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②시·도지사는 법 제6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거나 동 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③시·도지사가 법 제6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.            ④법 제6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⑤안전공사는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당해 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38조(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)①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(이하 "전기안전점검"이라 한다)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           1. ~ 3. (생략)            ②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전기안전점검신청서에 전기설비 단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③안전공사는 제32조제4항에 의한 검사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35조의4(정기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등)           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6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④-----            -----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⑤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-----</p> <p>제38조(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)①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-----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

현행	개정
<p>③ (생략) 〈신설〉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 제38조의2(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) 법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1.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 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 2. 안전점검 연월일 3. 안전점검의 결과 4. 안전점검자의 성명 5. 시공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</p>
<p>제40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설비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40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〈삭제〉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0조의2(보고) ①법 제9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,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7과 같다. ② (생략)</p>	<p>제50조의2(보고) ①----- ---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----- ----- 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〈신설〉</p>	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규칙 제3조제1항제2호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